

## 일변련 지적재산센터의 활동과 역사 일변련

일변련 지적재산센터<sup>1</sup>

### 1. 들어가는 말

일변련 지적재산센터(이하 ‘지재센터’라고 한다.)는 지적재산권의 확립 및 보급 등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련’이라고 칭한다.)<sup>2</sup> 내의 전문특별위원회이다<sup>34</sup>

조직의 계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겠지만, 본 지재센터는 일변련의 역사에 필적할만한 전통을 가지는 ‘지적재산제도 위원회’와 2002년 2월 25일 고이즈미 내각이 ‘지적재산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 전략본부<sup>5</sup>의 설치 결정에 따라 동년 6월 22일에 일변련 내에 설치된 일변련 회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정책 추진본부’가 발전적으로 통합되어 2009년 6월 1일에 탄생한 조직으로서 지적재산정책의 키를 잡고 있는 조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하, 조직의 개요와 연혁에 대해서 소개하겠다.

### 2. 지재센터 조직의 개요

#### (1) 목적

지재센터의 목적은, ‘지적재산권의 확립, 보급 및 국민적 이해를 증진하고 분쟁처리제도 등 사법 관련 사항에 관한 정책의 제언 등을 통하여 더 나은 지적재산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들이 지적재산업무에 관여하기 위한 시책을 기획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일변련 지적재산센터 설치요강 2 조).

---

<sup>1</sup> 문서 책임자: 일변련 지적재산센터 위원장 변호사 야베 코우조우, 동 사무국장 변호사 시게토미 타카미츠

<sup>2</sup>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은 전국 52개의 변호사회(기본적으로 각 도도부현 단위로 1개의 변호사회가 있으며, 동경에는 동경 변호사회, 제1 동경 변호사회, 제2 동경 변호사회의 3개의 변호사회가 존재하고, 북해도에는 아사히가와 변호사회, 쿠시로 변호사회, 삿포로 변호사회 및 하코다테 변호사회의 4개 변호사회가 존재한다. 각 지역에 존재하는 변호사회를 ‘단위회’라고 칭하기도 한다.), 변호사 및 변호사 법인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일본 전국의 모든 변호사 및 변호사 법인은 각지의 변호사회에 입회함과 동시에 일변련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변련은 일본국 헌법 제정에 따라 전후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제정된 변호사회법에 입각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49년 9월 1일에 창설되었다. 2023년 4월 1일 현재 변호사수는 44,961명이다.

<sup>3</sup> 일변련에는 자격심사회 및 징계위원회 등의 법정위원회, 인권옹호위원회 및 사법제도조사회 등의 설치위원회뿐 아니라 각종 목적별로 많은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변련지적재산센터는 그 중 하나이다.

<sup>4</sup> 2009년 2월 19일자 일변련 이사회 의결로 제정된 ‘일변련 지적재산센터 설치요강’에 근거한 것이다.

<sup>5</sup>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연혁은 이하 URL 기재를 참조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enkaku.html>

## (2) 임 무

지재센터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일변련 지적재산센터 설치요강 3 조).

- ①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제언
- ② 지적재산권에 관한 입법 및 제도에 관한 입안 및 제언
- ③ 지적재산권에 관한 입법 및 제도에 관한 정부, 심의회, 관련단체와의 협의 및 교류
- ④ 지적재산에 관한 법조양성 및 회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 ⑤ 지적재산에 관한 회원의 업무확대를 위한 활동
- ⑥ 기타 일본에서의 지적재산제도의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활동

## (3) 위원의 구성

지재센터의 위원의 수는 85 명 이내로 규정되어 동경도, 오사카부, 아이치현 등의 대도시(많은 변호사회원이 소재하는 단위회)에서 소정의 인원이 위원이 되어야 하며, 그 외 전국 각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각 지역(북해도 변호사회 연합회 등 고등재판소 소재 단위로 조직된 각지의 변호사회 연합회)에서도 최소 2 명의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지재센터의 위원은 각 지역 단위회의 추천을 참고로 하여 일변련 이사회가 선임하고, 임기는 2 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sup>6</sup> 2022년도<sup>7</sup>에는 위원장 이하 84명의 위원이 전국 모든 단위회에서 선출되었다. 지재센터 위원은 정부의 지적재산 전략본부, 경제산업성 산업구조 심의회 및 특허청의 각종 검토회, 문부과학성 문화심의회 등의 위원으로 취임해 있는 자가 많으며, 또한 동경고등재판소,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그 외 재판소의 지적재산 전문부에서 풍부한 직무경험을 쌓은 전직 판사, 외무성 및 경제산업성의 임기부직원으로서의 근무경험을 가진 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그야말로 양과 질 모든 면에서 풍부한 진용을 자랑한다.

## (4) 임원직

지재센터의 임원직으로는 위원장<sup>8</sup> 1 명, 부위원장 약간명을 두게 되어 있고, 임역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임기는 1 년이고 재임할 수 있다.

2009 년 6 월의 지재센터 창설 이래 올해까지의 위원장은 아래와 같다.

---

<sup>6</sup> 지재센터뿐만 아니라 일변련에 설치된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특별위원회규칙(1968년 7월 20일 규칙 제 22호(최종개정 2001년 11월 20일))에 근거한 것이다.

<sup>7</sup> 일변련의 연도는 6월 1일부터 다음년 5월 31일까지이다.

<sup>8</sup> '센터장'으로 칭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정식으로는 '위원장'이다.

2009 년도 이이가 히데도시(동경 <sup>9</sup> )	2016 년도 츠지이 코우이치(제 2)
2012 년도 마츠모토 츠카사(오사카)	2017 년도 시로야마 야스후미(제 1)
2010 년도 가타야마 에이지(제 1)	2018 년도 무라타 신이치(제 2)
2013 년도 하야시 이즈미(동경)	2019 년도 미야가와 미츠코(제 1)
2011 년도 스에요시 와타루(제 2)	2020 년도 히라노 시게토시(오사카)
2014 년도 이하라 도모미(교토)	2021 년도 핫토리 마코토(제 1)
2015 년도 와세다 유미코(제 2)	2022 년도 아베 코우조우(제 1)

#### (5) 사무국

지재센터 내에는 위원 변호사로 구성되는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무국장 1 명, 사무국 차장 1 명이 선임된다

#### (6) 간사

지재센터 내에는 간사를 둔다.<sup>10</sup> 간사의 책무는 ‘회장 및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 위원회 의안의 입안, 정리,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연구 등을 하는 것’이다(특별위원회규칙 제 10 조 4 항).

간사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적시적절하게 지재센터의 운영 및 의견형성 과정 등에서 조언을 할 것이 기대되는 자로서<sup>11</sup>, 의안의 입안이나 자료의 수집, 정리와 같은 사무적인 작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작업은 정부(正副) 위원장이나 사무국원의 책무이다.

### 3. 지재센터의 활동형태

#### (1) 전체회의

위원 일동이 모이는 회의(‘전체회의’라 부른다.)는 매월 1 회, 오후 1 시 15 분부터 오후 3 시까지 동경의 카스미가세키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된다. 원격지에 있는 위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Zoom 미팅을 이용하여 전체회의 참가가 가능하다. 전체회의에서는 사무국장의 의사진행 하에 각 프로젝트 팀(PT)의 활동안건, 퍼블릭코멘트 등의 법제도 개혁 관련 안건(일련이 제출하는 의견서 등의 초안작성), 지재연수 기타 이벤트 관련 안건(기획, 준비, 실행), 변호사업무 안건, 재판소나 특허청 등의 지재관계 국가기관, 지재관련 업계단체 등 국

<sup>9</sup> 이름 뒤에 기재한 지역은 소속 단위를 말하고, ‘제 1’은 ‘제 1 동경변호사회’, ‘제 2’는 ‘제 2 동경변호사회’를 가리킨다.

<sup>10</sup> 특별위원회 규칙 제 1 조에 근거한 것이다. 가산의 위원 중에서 선임되는 경우와(동조 제 2 항), 일련 회장의 공의를 얻어 위원 이외의 자에게 위촉하는 경우가 있으며(동조 제 3 항), 지재센터 간사는 후자에 해당한다.

<sup>11</sup> 특별위원회 규칙 제 10 조 4 항의 조문해석으로는 ‘연구 등을 하는 것’의 ‘등’에 포함된다.

내외의 지재관계단체와의 의견교환과 협력에 관한 안건 등 각종 심의사항을 심의하고 보고사항을 보고한다.

## (2) 프로젝트팀(PT) 등의 설치

지재센터는 80 명 정도의 위원을 가진 대규모 단체로, 상시 전체회의로 심의를 진행해서는 깊은 의논이 어렵기 때문에 각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프로젝트(PT)가 조직되어 있다. 2022 년도에 설치된 PT 는 특허 PT (좌장 사가라 유리코), 의장·상표·부정경쟁 PT (좌장 미야가와 미츠코), 저작권 PT(좌장 이치무라 나오야), 국제 PT(좌장 히라노 시게토시), 연수·업무확장 PT(좌장 스기야마 이치로)의 5 개 PT 이다.

지재센터의 각 위원은 적어도 하나의 PT 를 선택하여 이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각 PT 는 그때그때의 취급사항(위원장이나 전체회의로부터 개별안건에 관한 조사나 준비활동 등을 부탁받는다.)에 관하여 전체회의일 당일 오후 3 시부터 오후 4 시의 시간대에 PT 회의를 개최하여 의논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 이외에도 임시로 회합을 개최하거나 PT 별로 작성된 메일리스트를 활용하여 수시로 활발한 의논을 전개하고 있다.<sup>12</sup> 각 PT 에서 준비적으로 의논된 사항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전체회의에서 재차 의논하여 지재센터의 방향성을 정하게 된다.

또한 PT 와는 별도로 지재센터 횡단적으로 테바별 검토팀이 설치된다. 2013 년도부터 지재재판제도 검토팀<sup>13</sup>(초대좌장 하야시 이즈미)이, 2014 년도부터 재판 콘텐츠 조사연구팀<sup>14</sup>(초대좌장: 미오 미에코)이, 2017 년도부터 농수법무지원팀<sup>15</sup>(초대좌장: 야마구치 히로시)이 창설되어 각 테마의 조사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 (3) 정부위원장, 사무국회의

통상적으로 전체회의 개최일의 오후 0 시 30 분부터 오후 1 시 10 분 사이에 그날 전체회의의 심의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위원장, 사무국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는 어디까지나 전체회의의 심의순서와 시간배분, 보고담당자의 확인 등의 사무적인 성격의 것으로, 실질적인 심의는 전체회의에서 이루어진다.

## 4. 지재센터의 활동내용

---

<sup>12</sup> 각 위원은 정규의 소속 PT 이외의 PT 의 메일리스트에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어서 복수의 PT 에 참가할 수 있다.

<sup>13</sup> 2014 년도부터 '지재사법제도검토부회'로 개칭. 2022 년도 좌장: 무라타 신이치

<sup>14</sup> 2018 년도부터 '재판 콘텐츠팀'으로 개칭. 2022 년도 좌장: 마츠이 신이치

<sup>15</sup> 2022 년도 좌장: 스에요시 와타루

### (1) 일변련 의견<sup>16</sup>

일변련은 내각 및 그 외 정부기관이 제안한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새로운 책정 및 개정에 관하여 의견서를 공표하고 또한 회장성명을 발표한다. 지적재산법의 분야에 관해서는 지재센터가 최종적인 이사회 심사 및 승인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의견서 및 회장성명의 초안을 작성한다.

### (2)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및 동경지방법재판소 지적재산권부

지재센터에서는 1999 년부터 해마다 지적재산소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동경지방법재판소의 지적재산권부<sup>17</sup>와 의견교환회를 개최하여 2000 년도에서 2013 년도의 의견교환회의 내용이 판례타임즈지에 공개되었다 (판례타임즈 1051 호, 1095 호, 1124 호, 1160 호, 1177 호, 1179 호, 1207 호, 1240 호, 1271 호, 1301 호, 1324 호, 1348 호, 1374 호, 1390 호, Law & Technology No. 65). 또한 2014 년도 이후에는 Law & Technology 별책 '지적재산분쟁의 최전선'에서 그 결과가 공표되었다(Law & Technology 별책 '지적재산분쟁의 최전선' 1 호 내지 8 호).

이는 재판소 실무에 관한 귀중한 정보원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 (3) 국제전개

#### ① 국제회의 개최의 서포트, 의견표명 등

국제법조협회( I B A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sup>18</sup> 의 일본대회가 2014 년에 개최되었다. 지재센터는 국제법조협회의 대응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방문 및 동 재판소의 패널 토론을 개최했다.

또한 2017 년도부터 매년 최고재판소,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법무성, 특허청 및 변호사 지재 네트워크의 공동 개최에 따른 국제지재사법 심포지엄(JSIP)를 개최하고, 국제적인 법제도·운영의 다른점이나 과제를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 ②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일본의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공장, 사무소를 열거나 국제거래를 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제도, 법률관행 등에 의거하여 사업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는 바,

---

<sup>16</sup> 일변련의견서 등의 상세한 내용은 일변련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nichibenren.or.jp/activity/document/opinion/category/intellectual.html>

<sup>17</sup> 동경 지방재판소는 민사 제 29 부, 동 40 부, 동 46 부, 동 47 부가 지적재산 사건만을 취급하는

지재전문부이다. 또한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는 제 21 민사부와 제 26 민사부가 지적재산 사건만을 취급하는 지재전문부이나, 이들 각 부 및 오사카 고등재판소 제 8 민사부(지재집중부)와 오사카 변호사회 지적재산 위원회와의 협의회도 당 센터 기획은 아니나 별도 개최되고 있으며, 참가자에는 당 센터 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자들도 많다. 이 협의회 결과에 관하여도 Law & Technology 에서 발표되고 있다.

<sup>18</sup> 약 3 만명의 세계각국의 법조인, 195 개 이상의 법조단체가 가맹한 세계최대의 법률가 단체이다.

중소기업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기란 쉽지 않다. 지재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지재법률 서비스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 ③ 외국의 지재 변호사와의 의견교환회 개최

최근 일본에서의 재판의 IT 화에 관한 비교·검토를 위해 재판의 IT 화가 진행되고 있는 외국 변호사와의 의견교환회<sup>19</sup>를 개최하고 있다.

### (4) 각종단체와의 협의와 교류

필요에 따라서 지재관련 단체와의 의견교환회 개최나 일변련으로서의 이어나 강사의 추천 등의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정보 공유와 의논의 심화를 도모한다.

예를 들면, 일본지적재산협회(JIPA)와의 협의회는 통례적으로 연 1 회 개최되며, 산업계의 요청이나 질문을 지재법조로서 수렴시켜 이에 부응하는 충실한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2022 년도에는 일반사단법인 대학기술이전협의회(UNITT)와 산학연휴렛의 데이터 거래상의 법적 논점을 테마로 의견교환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일반사단법인 일본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AIPPI Japan)에서는 일변련을 대표하여 지재센터 위원장 경험자가 이사의 한 명으로서 선임됨과 동시에 판례연구회의 강사를 추천하는 등의 협력을 하고 있다.

### (5) 지적재산법 연수의 실시

일변련의 연수에서도 지재센터는 지적재산 전문변호사의 육성을 목적으로 2003 년이래 매년 커리큘럼의 편성(강사 및 테마 선정)에서 그 운영에 이르기까지<sup>20</sup> 지적재산법 연수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적재산법 연수는 법률개정 등의 동향을 아울러 시의적절한 내용부터 변호사 이외의 관련업계 강사를 초빙하는 등, 그리고 지재관련업계 전체를 개관할 수 있는 것까지 내용까지 폭넓은 내용으로 전개된다.

### (6) 관계성청과의 콜라보 이벤트

필요에 따라 관계성청과의 콜라보 이벤트를 실시하고, 최근에는 2022 년 3 월에 농수지재 이벤트, 2022 년 9 월 수산지재이벤트를 각각 개최하였고, 농수

---

<sup>19</sup> 2023 년 3 월 시점으로 한국, 중국, 미국, 독일의 지재 변호사와의 의견교환회를 실시하였다.

<sup>20</sup> 일변련에는 일변련 회장 직할 전문기관으로서 연구를 맡는 '총합 연수센터'가 존재하며, 동 센터와 협동하여 지재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지재분야의 최신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방에서의 농수지재 관련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시점을 공유하고 있다.

## 5. 지재센터의 연혁

### (1) 공업소유권제도 개정위원회의 계보

#### ① '공업소유권제도 개정위원회'

1963년 2월 19일에 개최된 일변련 전체이사회에서 공업소유권제도 개정위원회 설치의 건이 의제로 심의되어 그 설치가 결정되었다(초대 위원장은 나가이 아레키산다(제2)이다).<sup>21</sup>

이제껏 공업소유권 법제의 대개정시에 임시 개정조사위원회가 조직된 일은 있지만<sup>22</sup> 상설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때부터이다. 일변련에서 이러한 상설 위원회의 설치가 검토된 계기는 1962년 12월 12일에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 내에 '공업소유권제도 개정심의회'가 설치되어<sup>23</sup> 1962년 12월 19일부로 후쿠다 하지메 통상대신이 공업소유권제도 개정위원회 회장에게 공업소유권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의 개정에 대해서 자문<sup>24</sup>이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다. 일변련은 이러한 공업소유권제도의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이 분야에 조예가 깊은

<sup>21</sup> 초대 멤버는 위원장 외, 부위원장은 마츠모토 시게도시(동경) 및 우자와 신(제1), 위원은 가와구치 쇼조(동경), 신지 스스무(동경), 와쿠이 소우지(동경), 나가타 다이지로(제1), 마츠카타 마사히로(제1), 우치다 모리후미(제2), 이시구로 준페이(오사카), 노마 마사야키(교토), 사치 료조(나고야), 미하라 미치야(후쿠오카)였다. 위원장인 나가이 아레키산다(알렉산더, 변호사회 등록명은 아레키잔. 어머니가 독일인이어서 가정내에서는 독일어로 대화했다고 한다.)는 외교관의 경력을 가진 자로 저명한 국제파 변호사였다. 천식, 감기등의 치료약 성분인 에페드린을 개발, 추출하여 일본의 근대약학의 시조라고 불리는 약학자인 나가이 나가요시의 장남이다.

<sup>22</sup> 특허청의 공업소유권제도의 개정심의회에 대응하기 위해서(구체적으로는 1960년 7월 31일에 통상산업성내에 통상대신의 자문기관으로 '공업소유권제도 개정조사심의회'가 설립되어 동년 12월 20일부로 특허청 장관이 일변련에게 동 심의회에 대해서 1961년 3월 말까지 의견의 제출을 구하는 내용의 '공업소유권제도개정에 관한 의견의 제출'이라는 제목의 자문서를 보내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60년 12월 23일 이사회결의에 의거하여 '공업소유권제도 개정조사위원회'가 설립되어 1961년 3월 5일에 설치되었다. 위원의 수는 10명이고 동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은 나카마츠 준노스케(제2)이다. 그리고 특허심판과 소송문제에 대한 의견서를 결정하여 일변련 회장에게 보고했다. 1957년에 동경고등재판소장관으로부터 '특허법 128조의 4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특허청의 거절사정 불복항고심판사건의 기록)의 이용방법을 개정하는 건'에 대한 조치가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결정한 것을 마지막으로 동 위원회의 임무가 종료되어 위원회는 폐지되었다.

<sup>23</sup> 심의회개최의 취지는 '자유화의 발전과 함께 우리 산업의 장기발전은 획기적인 기술개발에 좌우되게 되었다. 특히 근래의 과학 기술의 진보는 거액의 연구투자를 기반으로 진행되어 기업의 입장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연구성과의 발명 등이 공업소유권제도에 의해서 적절하게 권리화되고 그 내용이 신속하게 공개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정황 하에서 외국의 경험을 참작하여 현실적 입장에 서서 공업소유권제도의 신시대적 적응을 도모하고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한 방향설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공업소유권제도개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유식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함이다'라는 것으로 1973년 당시나 지금이나 통용되는 내용임이 흥미롭다.

<sup>24</sup> 자문 내용은 '내외 정세의 추리와 일본 경제의 요청에 즉시 공업소유권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시키기 위해, 제도의 기본적 사항 개정과 관련하여 귀 심의회 의견의 구함'이라는 것이었다.

소수(10에서 15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를 위탁하여 일변련의 의견을 심의회에 반영하게 되었다.

#### ② '무체(無體)재산권제도 위원회'

'공업소유권제도 개정위원회'는 1972년 2월 19일 일변련 이사회에서 '공업 무체재산권제도 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당시의 위원장은 히카리이시 시로(제2)이다.). 이것은 종전의 대응이 미비했던 저작권분야에 대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5명 이내로 증원하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저작권법은 학문상 공업소유권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무체재산권이라는 명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명칭변경이 이루어졌다.

#### ③ '지적소유권위원회'

'무체재산권제도 위원회'는 1989년 2월 17일 일변련이사회에서 '지적소유권 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당시의 위원장은 혼마 다케시(동경)이다.). 이는 당시 매스컴 보도에서도 '무체재산권'이라는 명칭보다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그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에는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이사회 결의에 있었던 바, 이를 기회로 특별위원회의 설치요강을 정비하게 되었다.

#### ④ '지적재산제도 위원회'

'지적재산권 위원회'는 2003년 9월 20일에 개최된 일변련 이사회에서 '지적재산제도 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당시의 위원장은 고바야시 요이치로(오사카)이다.). 이는 동년 7월 8일에 정부의 지적재산 전략본부가 공표한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에서 향후 법령, 조약 등에서 사용되는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를 가능한 한 '지적재산권'으로 통일하기로 하여 이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제도 위원회의 목적, 임무는 '1.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지적재산권에 관한 입법 및 제도에 관한 입안, 3. 각종 심의회 및 정부관련기관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일변련의 견해를 반영시키는 것'이다(지적재산제도 위원회 설치요강 2조). 위원의 수는 35명 이내이다.

#### (2) '지적재산정책 추진본부'의 계보

전술한 바와 같이 고이즈미내각은 2002년 2월 25일 일본이 지적재산전략을 조속히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수상관저 내에 내각총리대신이 개최하는 회의로서 '지적재산 전략회의'를 설치하였고, 동 회의는 동년 7월 3일 '지적재산 전략대강'을 공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일변련은 2002년 6월 22일 이사회에서 지적재산에 관한 국가전략의 사법관련사항(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처리절차, 지적재산관련 법조양성문제, 변호사연수, 기타)에 대해서 정부 및 관련단체와 협의, 교류하여 정책을 제언하고, 지적재산관련의 법조양성 등의 실현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일변련 회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정책 추진본부'를 설치했다(지적재산정책 추진본부 설치요강 2조, 당시의 본부장은 모토야시 토오루 일변련회장이다.).

동 본부 위원 수의 수는 50명 이내로, 지역성을 고려하여 일변련 회장이 지적재산 소송실무에 정통한 자(변호사)에게 위탁하는 형태로 선임하였다.

### (3) '지적재산제도 위원회'와 '지적재산정책 추진본부'의 통합·발전

전술한 바와 같이 1963년 이래(임시 위원회를 포함하면 1951년 이래)로 공업소유권 및 저작권법제에 대해서 주로 법이론적 관점에서 조사연구활동을 수행한 '지적재산제도 위원회'와 지적재산 관계분야에 관한 정책제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재산정책 추진본부'는 별개의 계보를 가지고 각각 활동하고 있었는데, 법제의 이론면의 조사연구와 정책제언은 표리의 밀접한 관계에 있기에 활동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이 두 조직을 통합하여 활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2009년 양자를 발전적으로 통합하기로 하여 위원수 85명 이내라는 대규모 지재전문 특별위원회가 탄생하여 그 명칭을 '일변련 지적재산센터'로 변경하였다.

## 6. '변호사 지재 네트워크'의 창설

상기 일변련의 '지적재산정책 추진본부'의 활동 중에 탄생한 조직으로서 '변호사 지재 네트워크'가 존재한다.<sup>25</sup>

변호사지재 네트워크는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의 창설에 발맞추어 2005년 4월 8일에 설립된 전국규모의 네트워크로, 변호사의 지적재산 관련업무의 지역 밀착형 사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전문인재의 육성 및 사법서비스의 기반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일변련은 연합체로서 외부로부터 직접 지재관련업무의 상담 및 수탁을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적재산법에 조예가 깊은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별도대 형식으로 창설된 지재전문조직이다. 변호사 지재 네트워크에서는 보다 기동적이고 보다 광범위하게 업무에 대응하고 각 지역의 필요와

---

<sup>25</sup> 변호사지재네트워크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http://www.iplaw-net.com/index.html> 를 참조. 웹사이트의 관리 등 조직운영이 사무작업에 대해서는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민사법연구회가 담당하고 있고 변호사지재 네트워크는 회원의 연회비만으로 운영하고 활동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특성에 맞는 지역밀착형 지재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을 8 개의 블록(북해도지역회, 동북지역회, 관동갑신월지역회, 중부지역회, 킨키지역회, 시코쿠지역회, 추고쿠지역회, 규슈 · 오키나와지역회)으로 구분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많은 지재센터 위원이 변호사지재 네트워크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어 양 조직이 보조를 맞추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1 년도에는 변호사지재 네트워크의 웹사이트를 대폭 리뉴얼하여 '지적재산권 Q&A'나 '영업비밀 메일 매거진', '지재 잡다한 이야기' 등을 게재하여 지재법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계몽을 도모하고 있다. 2022 년도부터는 문화청에 의한 '문화예술분야의 계약 등에 관한 상담창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사무국을 설정하여 사무위탁을 받고 있다. 이외에 농수법무지원팀, 재판 콘텐츠팀과 같은 산업분야에 의한 활동 외에 전국 각지의 지역회에 의한 기획도 하고 있다. 예를들면, 2022 년도에는 동북지역회에서 '식품생산 ·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생각하는 심포지엄~아키타의 GI 상품 훈제 단무지를 참고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7. 지적재산 중재센터의 활동

일본변리사회와 일변련은 1998 년 3 월 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 분야의 분쟁 처리를 목적으로 '공업소유권 중재센터'라는 명칭의 ADR(재판외 분쟁해결기관)을 설립했다(동년 4 월 1 일부터 운영 개시). 그 후 취급분야를 지적재산권 일반으로 넓혀 그 명칭을 2001 년 4 월부터 '일본지적재산 중재센터'로 변경했다.

일변련은 '일본지적재산 중재센터'의 운영 및 지원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로 '일본지적재산 중재센터 사업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했다(위원의 수는 40 명 이내). 동 위원회 위원 중 다수는 지재센터의 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또한 '일본 지적재산 중재센터'는 동경본부, 관서지부, 나고야지부 외에 북해도, 센다이, 히로시마, 타카마츠, 후쿠오카의 5 개소에 지소가 설립되었고 각 지소의 설립, 운영에는 변호사지재 네트워크의 각 지역회의 멤버가 중심 스태프로 관여하고 있다.

## 8. 맺는 말

지적재산법은 글로벌리즘 하에 점점 격렬해지고 있는 산업상의 경쟁이나 AI, IoT, iPS 세포를 비롯한 재생의료의 진전과 같은 첨단기술 발전 동향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법분야이다. 또한 지적재산법의 보호 대상이 무형물이라는 성질상 쉽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으며, 예를들어 저작권의 무단복제 · 해적판의 배포나 등록상표의 무단이용이 인터넷을 거친 환

경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된다. 때문에, 그렇다면 일본의 산업이나 개인의 경쟁력 유지, 그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지적재산의 보호 강화 · 독점권의 강화라는 일면적인 가치관으로 법제도가 검토되기 쉽다. 한편으로 저작물에 관하여 본다면, 많은 국민은 이용자이며 영업비밀의 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 문제, 혹은 직무발명에 있어서 고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지적재산 귀속이나 대가에 관한 문제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에서도 상시 존재하고 있다. 지재센터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사회정의의 실현'(변호사법 제 1 조)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항상 의식하며 사법제도를 짚어준 실무법조의 입장에서 전 법질서와 조화로운 지적재산법제의 구축 및 실무운용을 위하여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자 한다.

이상